

2023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

◇ 도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·효율성 제고를 통한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

■ 평가개요

- 평가대상 : 23개 기관(출연기관 20, 보조단체 3)
 - ※ 경북연구원(정책기획관실 주관, 평가결과 : A) 포함
- 시행기간 : 2023. 4 ~ 9월
- 대상연도 : 2022년
- 평가기관 : (주)가치경영원 위탁시행
- 평가지표
 - 기관평가 : 3대부문(지속가능경영, 경영성과, 사회적가치)
 - 기관장평가 : 2대부문(책임경영, 성과과제)

■ 기관 평가결과

- (S 등급) 2개
 - 한국국학진흥원, 여성정책개발원
- (A+등급) 3개
 - 콘텐츠진흥원,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, 문화엑스포
- (A 등급) 4개
 - 신용보증재단, 테크노파크, 행복재단, 문화재단
- (B+등급) 4개
 - 환경연수원, 새마을재단,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, 경제진흥원
- (B 등급) 7개
 - 종합자원봉사센터, 청소년육성재단, 교통문화연수원
 - 바이오산업연구원, 독도재단, 장애인체육회, 독립운동기념관
- (C 등급) 2개
 - 인재평생교육진흥원, 환동해산업연구원

■ 기관장 평가결과

- (85점 이상) 3개
 - 테크노파크, 콘텐츠진흥원, 한국국학진흥원
- (80점 이상) 6개
 - 여성정책개발원,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, 문화엑스포, 행복재단
환경연수원, 신용보증재단
- (75점 이상) 8개
 -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, 문화재단, 새마을재단, 경제진흥원
바이오산업연구원, 독도재단, 청소년육성재단, 장애인체육회
- (70점 이상) 3개
 - 종합자원봉사센터, 환동해산업연구원, 교통문화연수원
- (65점 이상) 2개
 - 독립운동기념관, 인재평생교육진흥원

※ 기관장 경영평가 지표

<2022년>			<2023년>		
평가범주	평가항목	배점	평가범주	평가항목	배점
책임경영 (50)	기관경영평가	50.0	책임경영 (80) 정량지표	경영층의 리더십	20.0
				전략경영	20.0
업무혁신 노력	15.0				
조직·인사관리	20.0				
윤리경영	5.0				
성과과제 (50)	중장기 전략과제 및 혁신과제	50.0	성과과제 (20) 정성지표	도정 연계성 확보 노력	5.0
				도 발전 기여도	5.0
				중장기 전략 및 혁신과제 수행 노력	10.0
계		100	계		100

■ 평가결과 활용

- 기관장평가 결과 :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시 기초자료 활용
- 기관평가 결과
 - 부진기관(C등급 이하)은 경영컨설팅 실시 예정
 -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인센티브 차등 지급
 - 성과급 지급률은 아래와 같음('23.9.25. 운영심의위원회 결정)

① 기관·단체장

구 분	S	A		B		C	D
		A+	A	B+	B		
지급률	220%	180%	170%	130%	120%	70%	0%

※ 기관·단체장 : 기본연봉 기준(기본연봉 × 1/12) × 지급률

② 임·직원

구 분	S	A		B		C	D
		A+	A	B+	B		
지급률	180%	160%	150%	130%	120%	70%	0%

- (적용대상)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
- (지급시기)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·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('23.12월 한)
- (지급액) 연봉(보수)월액 x 지급률
 - ※ 연봉월액 = 기본연봉 총액/근무월수
 - 보수월액 = 총보수액(기본급 총액 + 비속인적 수당 총액)/근무월수
 - ※ 연봉(보수)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22년도 기준으로 산정
- (지급총액)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산한 총액범위에서 성과급 지급총액(ceiling) 결정
 - ※ 총액산정 시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금액을 반영
 - ※ 전년도 초과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(2022년 실적) 성과급 지급에 차감하여 지급

- **(차등지급)**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총액(ceiling)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 이상 차등을 두어 지급
 - ※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·업무성과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기관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하되, 개인별 근무평정은 2022년을 대상기간으로 실시

- **(등급별 인원 배분)** 최고·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%p 이상으로 하고, 등급별 인원 비율을 최고는 20% 이내, 최저는 10% 이상으로 강제 배분
 - ※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 비율이 50%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

- **(지급제한)** 비리자 또는 성과가 저조한 기관,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(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)
 - ①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자
 - ② 음주운전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금품·향응 수수, 공금 횡령·유용, 채용 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
 - ③ 중징계처분(파면, 해임, 강등, 정직 등)을 받은 자
 - ④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(1월은 30일로 계산)
 - ⑤ 임원이 ①~③에 해당하는 경우, 해당 기관의 기관장도 지급대상에 제외

※ 연도 중 입·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(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)

【입사자】 '23년 입사자의 경우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

【퇴사자】

- 기관장 및 임원급
 - 사업연도 중 기관장 및 임·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
- 직원
 - '23년 퇴사자의 성과급 지급은 아래의 방법 중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
 - (가) 퇴직일 기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근무기간을 일할('22. 1. 1. ~'23. 퇴직일)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
→ 경영평가 결과 전 퇴사할 경우
 - (나) 2023년도 경영평가(2022년 실적)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근무기간을 일할('22. 1. 1. ~'23. 퇴직일)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일괄 지급
 - (다)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하고, 차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퇴직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
 - * 2022년 근무기간은 2023년(2022년 실적)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
 - * 2023년 근무기간은 2024년(2023년 실적)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